



의안번호

제20호

## 2019년도 수시분 1차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 출 자	논 산 시 장
제출연월일	2019. 3. 6.

# 2019년도 수시분 1차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안 번호	제20호
----------	------

제출연월일 : 2019. 3. 6.

제 출 자 : 논 산 시 장

## 1. 제안이유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에 따라 201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였으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에서 규정하는 공유재산의 취득 사유가 발생하여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2019년도 수시분 1차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결을 얻고자 함.

## 2. 주요내용

### [일반회계]

- 론볼경기장 건물 취득
  - 등화동 534-1번지 1,600m<sup>2</sup>(지붕)
- 양촌자연휴양림 보완사업 토지 취득
  - 양촌면 남산리 1-1번지외 25필지 110,415m<sup>2</sup>(토지)
- 논산시 공영주차장 조성 토지 취득
  - 강경읍 황산리 87-22번지외 7필지 4,379.3m<sup>2</sup>(토지)

### 3. 공유재산 관리계획

#### 가. 총괄

#### ○ 2019년도 수시분 1차 관리계획 총괄표

(단위:m<sup>2</sup>, 천원)

구 분			당초(A)			변경(A+C)			증감(C)		
			건수 (필지,동)	수량	금액	건수 (필지,동)	수량	금액	건수 (필지,동)	수량	금액
취 득	계	토지	2 (34)	114,794.3	1,924,949						
		건물 기타	1 (1)	1,600	1,000,000						
	1.매입	토지	2 (34)	114,794.3	1,924,949						
		건물 기타	1 (1)	1,600	1,000,000						
2.교환 으로 취득	토지										
	건물 기타										
3.기타 취득	토지										
	건물 기타										
처 분	계	토지									
		건물 기타									
	4.매각	토지									
		건물 기타									
5.양여	토지										
	건물 기타										
6.교환 으로 처분	토지										
	건물 기타										
사용 및 대부허가	토지										
	건물 기타										

## 가-1. 일반회계

### ○ 2019년도 수시분 1차 관리계획 총괄표

(단위:m<sup>2</sup>, 천원)

구 분			당초(A)			변경(A+C)			증감(C)		
			건수 (필지,동)	수량	금액	건수 (필지,동)	수량	금액	건수 (필지,동)	수량	금액
취 득	계	토지	2 (34)	114,794.3	1,924,949						
		건물 기타	1 (1)	1,600	1,000,000						
	1.매입	토지	2 (34)	114,794.3	1,924,949						
		건물 기타	1 (1)	1,600	1,000,000						
2.교환 으로 취득	토지										
	건물 기타										
3.기타 취득	토지										
	건물 기타										
처 분	계	토지									
		건물 기타									
	4.매각	토지									
		건물 기타									
5.양여	토지										
	건물 기타										
6.교환 으로 처분	토지										
	건물 기타										
사용 및 대부허가	토지										
	건물 기타										

## 나. 취득대상 재산목록

(단위:m<sup>2</sup>, 천원)

일련 번호	재 산 표 시			가감정 가 격	취득 시기	취득 사유	비고
	구분	소 재 지	수량				
		사업별개요참조					

## 다. 처분대상 재산목록

(단위:m<sup>2</sup>, 천원)

일련 번호	재 산 표 시			가감정 가 격	처분 시기	처분사유	비고
	구분	소 재 지	수량				
		해 당 없 음					

## 라. 사업별 개요

### ○ 일반회계

#### 1. 론볼경기장 건물 취득

##### □ 취득개요

##### ○ 사업목적 및 용도

- 목 적: 기존 조성되어 있는 론볼경기장에 지붕을 설치하여  
보다 편안한 환경에서 체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 용 도: 론볼경기장 지붕 설치

##### ○ 사업기간: 2019년 3월 ~ 11월

##### ○ 취득위치: 충남 논산시 등화동 534-1

##### ○ 취득면적(규모): 1,600m<sup>2</sup>

○ 소요예산: 1,000,000천원<국비63%/도비00%/시비37%>

○ 취득재산 대상내역 : 론볼경기장 지분

(단위:m<sup>2</sup>/천원)

연번	위 치	지번	규모	사 업 비				취득 시기
				계	국 비	도 비	시 비	
1	등화동	534-1	1,600	1,000,000	630,000	-	370,000	19년 하반기

□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 설계용역실시 : 2019년 3월 ~ 4월

○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 2019년 7월 ~ 8월

○ 착공 및 준공: 2019년 9월 ~ 11월

□ 위치도



□ 현황사진



## 2. 양촌자연휴양림 보완사업 토지 취득

□ 취득개요

○ 사업목적 및 용도

- 목 적: 양촌자연휴양림 보완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제2지구 조성을 위한 부지매입으로 휴양림 활성화를 충족시키고자 함

- 용 도: 양촌자연휴양림 보완사업을 위한 토지매입

○ 취득위치: 논산시 양촌면 남산리 1-1번지의 25필지

○ 취득면적: 110,415m<sup>2</sup>

○ 소요예산: 349,058천원<시비100%>

○ 취득재산 대상내역 :

(단위 : m<sup>2</sup>, 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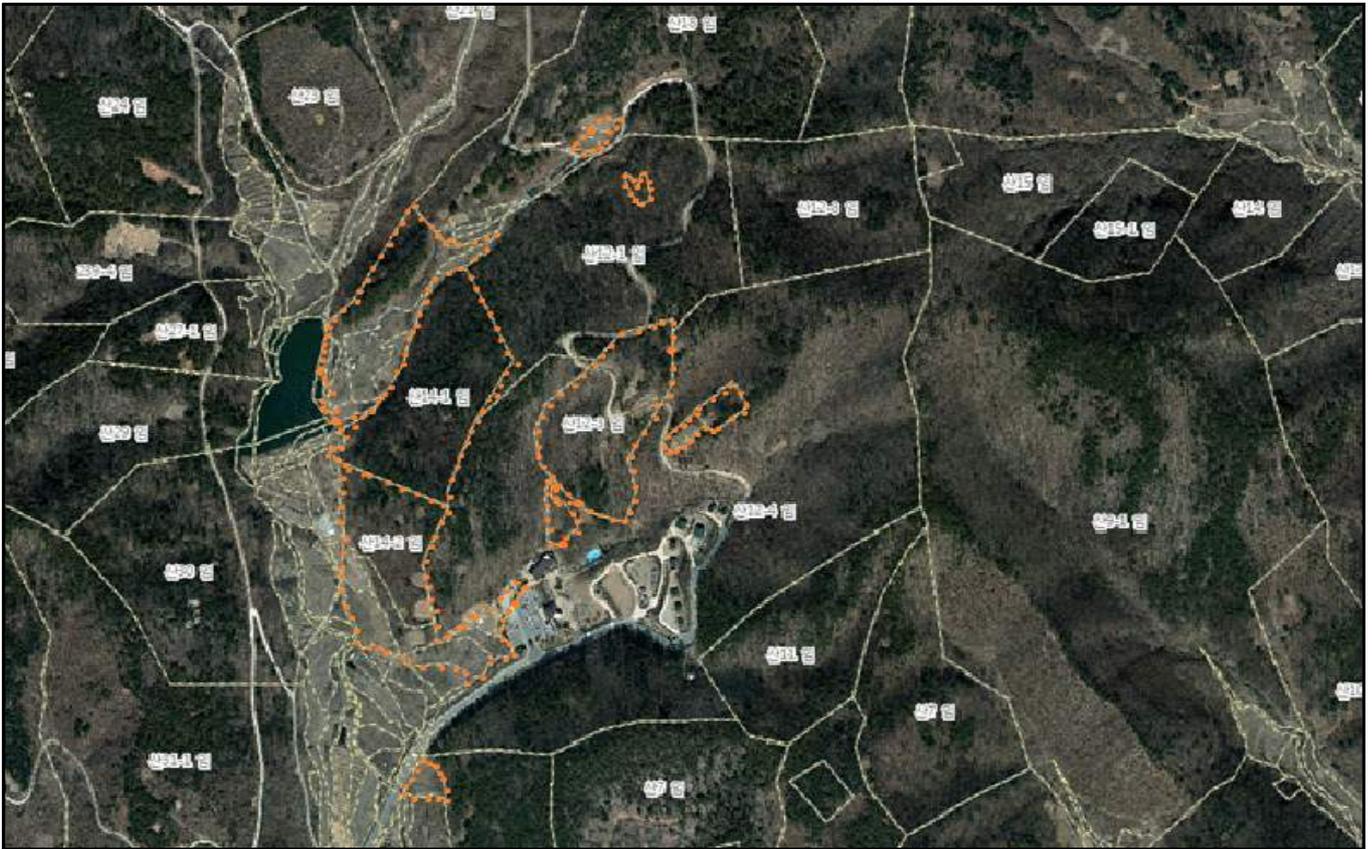
일련 번호	재 산 표 시			추정가격	취득 시기	취득사유	비고
	지목	소재지	수량				
			110,415	349,058			
1	임	양촌면 남산리 1-1	635	3,804	2019.	양촌자연휴양림 보완사업을 위한 토지매입	
2	답	양촌면 남산리 1-2	945	9,639			
3	전	양촌면 남산리 1-3	1,577	18,294			
4	임	양촌면 남산리 산12-2	992	1,270			
5	임	양촌면 남산리 산12-3	23,306	23,027			
6	임	양촌면 남산리 산12-7	1,983	2,539			
7	임	양촌면 남산리 산14-1	31,269	47,529			
8	임	양촌면 남산리 산14-2	15,867	24,594			
9	임	양촌면 남산리 산17-1	10,857	14,766			
10	답	양촌면 남산리 218	1,578	17,043			
11	답	양촌면 남산리 221-1	1,365	11,780			
12	답	양촌면 남산리 221-2	2,951	25,468			
13	전	양촌면 남산리 230	2,949	28,606			
14	전	양촌면 남산리 230-1	2,926	25,252			
15	전	양촌면 남산리 230-2	459	4,453			
16	전	양촌면 남산리 230-3	1,018	8,786			
17	전	양촌면 남산리 236	793	6,844			
18	임	양촌면 남산리 236-1	1,488	12,842			
19	임	양촌면 남산리 236-2	549	4,672			
20	전	양촌면 남산리 236-3	4,714	40,682			
21	유	양촌면 남산리 236-4	56	147			
22	답	양촌면 남산리 240	754	7,691			
23	전	양촌면 남산리 240-1	638	6,343			
24	전	양촌면 남산리 240-2	291	981			
25	전	양촌면 남산리 240-3	376	1,268			
26	임	양촌면 남산리 241-2	79	738			

※ 공유재산 취득시 감정가격에 따라 취득가격은 추후 변동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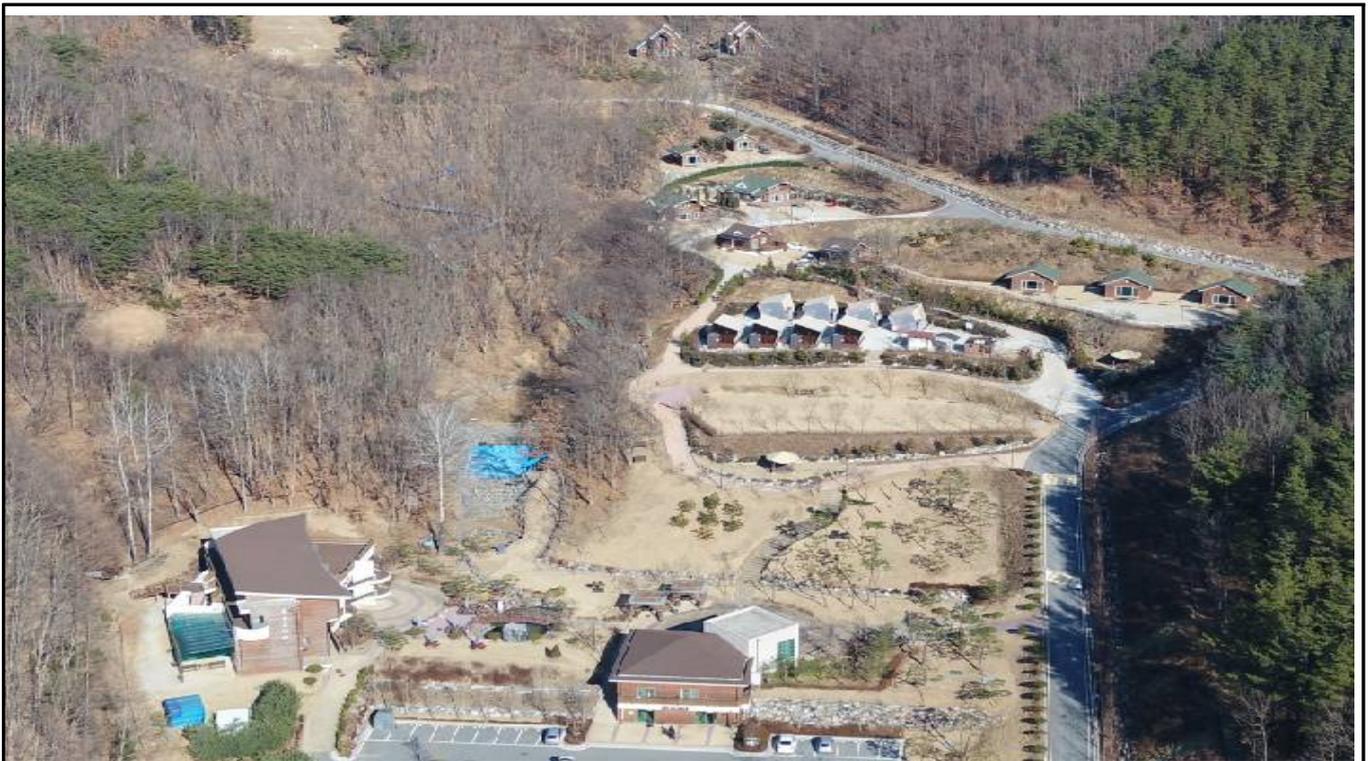
□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

- 토지매입: 2019년 3월~12월
- 설계용역: 2020년 1월~5월
- 공사착공 및 준공 : 2020년 6월~12월

□ 위치도



□ 현황사진



### 3. 논산시 공영주차장 조성 토지 취득

#### □ 취득개요

○ 사업목적 및 용도

- 목적 : 도로의 불법 주·정차 해소 및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한 공영주차장 부지를 확보하기 위함
- 용도 : 공영주차장 조성

○ 사업기간: 2019년 3월 ~ 2020년 12월

○ 취득위치: 강경읍 황산리 87-22번지 일원, 대교동 205-3번지 일원, 내동 1213번지 일원

○ 취득면적: 4,379.3m<sup>2</sup>

○ 소요예산: 1,575,891천원<시비 100%>

○ 사업규모: 소형차 기준 약 147면 조성

○ 취득재산 대상내역 : 토지

(단위 : m<sup>2</sup>, 천원)

일련 번호	재 산 표 시			추정가격	취득 시기	취득사유	비고
	지목	소 재 지	수량				
			<b>4,379.3</b>	<b>1,575,891</b>			
1	대	강경읍 황산리 87-22	317	90,000	2019	공영주차장 조성	17면
2	대	강경읍 황산리 87-11	142	40,000			
3	전	대교동 205-3	1,412	328,250	2019	공영주차장 조성	100면
4	전	대교동 203-59	731	129,250			
5	하천	부창동 269-1	1,088	380,800			
6	대	내동 1213	230.5	198,400	2019	공영주차장 조성	30면
7	대	내동 1219	229.5	203,681			
8	대	내동 1220	229.3	205,510			

※ 공유재산 취득시 감정가격에 따라 취득가격은 추후 변동 있음

#### □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

- 토지매입: 2019년 3월~6월
- 설계용역: 2019년 7월~9월
- 착 공: 2019년 10월~12월

□ 강경읍 황산리 공영주차장 위치도(강경 황산리 87-11, 87-22)



□ 강경읍 황산리 공영주차장 위치도현황사진(강경 황산리 87-11, 87-22)



현 장 사 진

□ 대교·부창동 공영주차장 위치도(대교동 205-3, 203-59, 부창동 269-1)



□ 대교·부창동 공영주차장 위치도현황사진(대교동 205-3, 203-59, 부창동 269-1)



□ 내동 공영주차장 위치도(내동 1213, 1219, 1220)



□ 내동 공영주차장 현황사진(내동 1213, 1219, 1220)



# 관 련 법 규

## □ 「지방자치법」 제39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① 지방의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조례의 제정·개정 및 폐지
2. 예산의 심의·확정
3. 결산의 승인
4.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수수료·분담금·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5. 기금의 설치·운용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처분
8.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9. 청원의 수리와 처리
10.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사항 외에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계획을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는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는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한다)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요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 양수, 환지(換地), 무상 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이 경우 기준가격은 토지에 대해서는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算定)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로 하고, 건물과 그 밖의 재산에 대해서는 「지방세법」에 따른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의 경우에는 토지보상비 등 토지를 취득하는 데 드는 비용을 제외한 건축비 및 시설비 등 사업비로 한다.

가. 취득의 경우: 20억원(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0억원)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경우에는 20억원)

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1건당 6천제곱미터(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1건당 5천제곱미터(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2천제곱미터)

## □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 및 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시장이 다음연도 예산편성 전까지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 공유재산을 취득 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